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환경위생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방재정법 및 지하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
-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가구 주민들의 수질검사수수료의 부담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 기피 등 안정적인 지하수원 공급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를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감면”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